

충청북도노인맞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

2001. 1. 19
교육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0년 12월 16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12월 18일
- 다. 상정일자 : 2001년 1월 18일(제183회 임시회 2차교육사회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복지환경국장 김선웅)

가. 제안이유

- 병원명칭에 치매라는 질병명의 표기는 환자와 그 가족이 수치감을 느낄 우려가 있고, 병원명이 너무 길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 의료보험법이 폐지(2000.7.1)됨에 따른 관련조항의 수정과, 비급여 대상 의료수가를 의료법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
 - “충청북도노인맞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를
 - ⇒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로
- 의료수가 징수기준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 환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함(제5조제1항)
-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제5조제2항)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박범수)

□ 충청북도 노인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 병원명칭 중 치매라는 질병명의 표기로 환자와 그 가족에게 수치감을 줄 우려가 있어 조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 의료수가 징수기준 규정을 상위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호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명칭 변경 조항이 치매요양병원 설립취지와 상호관계등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필요한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중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이하 “치매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 이라 한다)”으로, “운영”을 “위탁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3조·제4조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4항중 “치매요양병원”을 각각 “노인전문병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의료수가 적용은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한다”를 “의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를 “의료수가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7호·제8조·제10조제1항 및 제11조중 “치매요양병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 설치및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및 치매 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의료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u>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이하 "치매요양병원"이라 한다)</u>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치) <u>치매요양병원</u>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25번지에 둔다.</p> <p>제3조(업무) <u>치매요양병원</u>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내지 3. (생략)</p> <p>제4조(운영)①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u>치매요양병원</u>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10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이 끝난 후 계속 재계약을 할 수 있다. 1. 내지 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u></p> <p>제1조(목적) <u>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이하"노인전문병원"이라 한다)</u> <u>위탁운영</u>.....</p> <p>제2조(위치) <u>노인전문병원</u></p> <p>제3조(업무) <u>노인전문병원</u>..... 1. 내지 3. (현행과 같음)</p> <p>제4조(운영)①.....<u>노인전문병원</u>..... 1. 내지 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매요양병원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p> <p>③ (생략)</p> <p>④ 도지사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치매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② 노인전문병원</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노인전문병원..</p> <p>⑤ (현행과 같음)</p>
<p>제5조(의료수가) ① 환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수가 적용은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한다.</p> <p>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p>	<p>제5조(의료수가)①..... 의료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의료수가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6조(관리) 도지사는 치매요양병원의 적정한 운영 및 입원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요양치료 및 그 외 서비스의 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수탁자가 정하여 승인 받도록 하게 한다.</p> <p>1. 내지 6. (생략)</p> <p>7. 기타 치매요양병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p>	<p>제6조(관리)..... 노인전문병원</p> <p>1. 내지 6. (현행과 같음)</p> <p>7. 노인전문병원</p>

현행	개정안
<p>제8조(기록의 정리) <u>치매요양병원</u>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비치 하여야 한다</p>	<p>제8조(기록의 정리) <u>노인전문병원</u>..</p> <p>.....</p> <p>.....</p>
<p>1. 내지 5. (생략)</p>	<p>1. 내지 5. (현행과 같음)</p>
<p>제10조(보고와 감독) ①도지사는 <u>치매요양병원</u>을 운영하는 자 및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구입업무 등을 대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을 조사 및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10조(보고와 감독) ①.....</p> <p><u>노인전문병원</u>.....</p> <p>.....</p> <p>.....</p> <p>.....</p> <p>.....</p> <p>.....</p> <p>.....</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u>치매요양병원</u>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p>제11조(위탁의 취소).....</p> <p>.....</p> <p>..... <u>노인전문병원</u></p> <p>.....</p>
<p>1. 내지 3. (생략)</p>	<p>1. 내지 3. (현행과 같음)</p>